# 진료비 감면 규정

제정: 1996. 4. 12
제10차 개정: 2018. 2.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소속된 교직원 및 그 가족이 본 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감면하여 교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 앙양 등 교직원의 후생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진료비라 함은 본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제4조(감면 대상)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지학원 소속 전임・비전임 교원, 교직원, 연구원, 퇴직자, 산학협력단 (개정 2018.02.01.)
2. 상지학원 소속 교직원의 배우자 및 양가부모
3. 병원 교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개정 2018.02.01.)
4.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학교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 (개정 2018.02.01.)
5. 상지학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의 교육생, 상지대학교 및 병원 자매결연・협약 체결기관 (개정 2018.02.01.)
6. 병원직원 추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개정 2018.02.01.)
7. 삭제 (2018.02.01.)
8. 삭제 (2018.02.01.)
9. 삭제 (2018.02.01.)
10. 삭제 (2018.02.01.)

제5조(감면 범위) 진료비 감면범위는 “별표 1” 진료비 감면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15.12.01., 2018.02.01.)

제6조(관계서류 제출) 진료비 감면대상자의 확인이 필요할 시 증빙서류를 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1.)

제7조(진료비 납부) 진료비는 본원이 정한 진료비 수납 절차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1.)

제8조(주관 부서) 진료비 감면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무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02.01.)

제9조(사후 관리) 원무과는 진료비 감면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1) (개정 2018.02.01.)

# 진 료 비 감 면 기 준 표

| 번호 | 구 분 | 외래(%) | | 입원(%) | | 감면기준 | 비고 |
|---|---|---|---|---|---|---|---|
| | | 본인 | 직계존비속 | 본인 | 직계존비속 | 비급여기준 | |
| 1 | 상지학원 소속 전임·비전임 교원, 교직원, 연구원, 퇴직자, 산학협력단 | 30 | 20 | 30 | 20 | 비급여기준 | |
| 2 | 상지학원 소속 교직원의 배우자 및 양가부모 | 20 | | 20 | | 비급여기준 | |
| 3 | 병원교직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 30 | | 30 | | 비급여기준 | |
| 4 |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 재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 | 20 | | 20 | | 비급여기준 | |
| 5 | 상지학원에서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생 및 상지대학교 및 병원자매결연, 협약 체결기관 | 10 | 10 | 10 | 10 | 비급여기준 | |
| 6 | 병원직원 추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10 | | 10 | | 비급여기준 | |
| | (주)<br>1. 교직원 직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원내공상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병원장 결재 후 원비 처리 할 수 있다.<br>2. 진료부장,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0%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추가 감면은 병원장이 감면 할 수 있다.<br>3. 협약기관은 협약서 기준에 따른다. | | | | | | |

(별표 2)

| | 결재 | 계 | 계장 | 과장 | 사무국장 | 병원장 |
|---|---|---|---|---|---|---|
| | | | | | | |

**진 료 비 감 면 신 청 서**

**관련번호No.**

| | | | | |
|---|---|---|---|---|
| 환자인적사항 | 등록번호 | | 진료구분 | ( )외래 ( )입원 ( 호실) |
| | 수진자명 | | 성 별 | ( ) 남 ( ) 여 ( 세) |
| | 주 소 | | | |
| | 진 료 과 | | 진료일자 | |
| 신청인 | 명 칭 | | | |
| | 성 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진 료 비 내 역 (감 면 금 액 포 함)

| 총진료비 | 본인부담 | 일반할인 | 감면금액 | 실부담금 | 총입금액 | 미수발생 |
|---|---|---|---|---|---|---|
| | | | | | | |

진 료 비 감 면 대 상 및 범 위

| 구 분 | 요양기관 | 감면대상 | 접 수 비 | 외 래 | 입 원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할인사유 | | | | | |

위와 같이 진료비를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